

공인심판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

현 행	개 정 내 용	비 고
<p>이상 생략</p> <p>제 5 조 공인심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되, 특수부서(상소심판원, 장내사령)에는 이의 구제를 받지 않는다.</p>	<p>이상 생략</p> <p>제 5 조 공인심판원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. 단, 상소심판원 및 경기장통제원의 연령은 만80세로 정한다.</p>	<p>자구수정 및 내용신설</p>